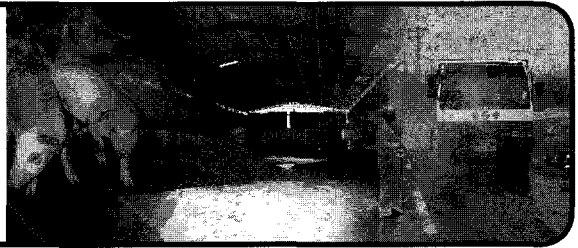




2004년

양돈산업 주요 현안과 해결책 점검



축산업등록제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

1. 도입배경

■ 축산업등록제는 환경보전, 축산물 안전성확보, 가축질병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,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, 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정보교류 확대를 촉진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 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

•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시장·군수에게 등록토록 하고 농가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

•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이력제, 농가별 가축방역 관리시스템 및 친환경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·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

• 가축개량사업, 축산종합컨설팅, 축산물 추적조사 등 기존의 각 기관·단체 또는 사업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농가 지원·관리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■ 한편, 네덜란드, 벨기에, 프랑스 등 EU의 각국도 농가별 농경지 면적 확보, 사육두수 상한설정,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, 가축의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있고

• 대만은 '97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'98년부터 축목업 등기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과 축산물 안전성제고를 위해 축산업에 대한 관리

노수현 서기관
농림부 축산정책과

축산업등록제 도입은 먼저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수 농가와 접촉하는 종축업·부화업·계란집하업 등에 대한 관리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가축질병 방역을 효율화 할 수 있고,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, 일정 사육조건 충족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환경 축산체계 정립을 촉진한다.

를 강화하여 나가는 추세에 있다.

■ 축산업 등록제는 지난해 12월 축산법이 개정('02. 12. 26 공포, '03. 12. 27 시행)되어 도입근거가 마련되고 생산자단체,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의 등을 실시하여 등록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축산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.

2. 주요내용

가.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

■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방역 등 질병관리의 철저를 위해서는 전 농가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행정수요 증가, 소규모 부업농가 사후관리의 어려움, 투입노력에 비해 질병 방지효과가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등록토록 하였다.

• 종축업·부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전 축산업자

• 닭의 ①알을 수집하여 ② 선별·포장한 후 ③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치는 계란집하장 경영자

• 다음의 가축사육농가

- 소사육농가 :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㎡를 초과하는 농가

- 양돈농가 :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㎡를 초과하는 농가

- 양계농가 :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㎡를 초과하는 농가

• 등록대상 가축사육 농가 수는 축종별로 한육우 9천호, 젓소 8천호, 돼지 10천호, 닭 36천호로 모두 31천호로 예상된다.

나. 등록사항

• 경영주체 정보 : 성명, 주소, 주민번호, 전화번호 등

• 사업장 정보

- 사업장 명칭, 소재지, 대상 축종

- 사업장 규모(입란능력, 종축두수, 계란선별능력, 가축사육시설면적 등)

• 구비서류
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,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 사용권리 증명서류, 가축사육시설·장비의 명세 등

다. 등록기간

■ 등록대상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미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

- 기존 종축업·부화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

- 계란집하업 : '04. 6. 26일까지 등록

- 가축사육업 : '05. 12. 26일까지 등록



라. 등록 시설·장비 기준 및 자금지원

■ 등록시에 일정한 시설·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·장비기준은 등록제 도입취지를 살리되 농가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최소화하였다.

• 다수 농가에 영향을 미치는 종축업·부화업 및 계란집하업은 등록시 갖추어야 할 시설·장비기준을 강화하여 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

모 하고자 하며

- 부화업은 부화장과 병아리방 설치, 종축업은 성장단계별 구분사육시설 구비, 계란집하업은 계란중량선별 및 포장장비 등 축산업 종류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하였다.

• 가축사육업은 농

가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·장비기준을 최소화하여 별도의 준비 없이 현재상태 그대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- 다양한 형태의 무허가 축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모든 축사를 허가를 받아 등록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'가축사육시설' 개념을 도입하여,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련 없이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현재 상태대로

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• 그리고 등록시 필요한 시설·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종축업·부화업 및 계란집하업은 1억원, 가축사육농가는 5천만원 이내에서 용자 지원할 계획이며
- 용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'04년 3월 말까지 시장·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마. 휴·폐업, 영업재개, 등록사항 변경 및 영업승계 신고

• 축산업을 휴·폐업을 하는 경우와 양수, 상속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축산업 영업을 승계한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30일 이내에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

• 축산업 등록사항중 사업장명칭, 대표자(법인), 부화능력 및 가축사육시설 면적 20%이상 증가, 가축종류의 변경(한육우와 젓소간 변경에 한함) 등 변경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바.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

• 축산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가축두당 최소축사면

축산업등록제는 등록농가 전산 D/B 표준화를 통한 농가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농가교육 실시로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·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등록농가의 사육규모, 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·분석할 수 있게 되므로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축산정책의 실시로 정책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적을 확보토록 하여 밀식사육에 의한 질병발생과 환경오염 부담을 줄이고, 친환경축산교육을 이수토록 하며, 종돈업의 경우 혈통보증서를 발급토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여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전환을 도모하였다.

사.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연계

■ 이와 함께 내년부터 등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, 두당 적정사육면적 확보의무 강화, 조사료포 확보를 통한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경종농업과 유기적 순환농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도입할 계획이다.

3. 기대효과

■ 이와 같이 축산업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

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
- 먼저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수 농가와 접촉하는 종축업·부화업·계란집하업 등에 대한 관리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가축질병 방역을 효율화 할 수 있고

- 둘째,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, 일정 사육조건 충족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환경 축산체계 정립을 촉진하며

- 셋째, 등록농가 전산 D/B 표준화를 통한 농가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농가교육 실시로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·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

- 넷째, 등록농가의 사육규모, 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·분석할 수 있게 되므로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

축산정책의 실시로 정책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■ 축산업등록제가 도입되었다고 축산업의 선진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,

• 축산업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다하기 위해 농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. **양돈**

